경영유의사항 공시

1.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본점

2. 조치일 : 2021. 6. 1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 1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장외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외파생상품 총위험 한도 정비

○ ○○○○○부는 장외파생 상품 총위험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파생상품 관련 위험가중자산 중 신용가치 조정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동 한도에 신용가치 조정액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에 대해 신용·시장·운영 리스크를 합산하여 관리하기 위한 한도

㉡ 장외파생상품 관련 성과평가 체계 개선

○ △△△△부는 ◉◉◉◉부 성과평가시 비이자이익에 높은 비중(50%)을 두고

있으나, 동 지표에 리스크 비용(거래 상대방 리스크, 신용가치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아 비정형파생상품(TRF, Target Redemption Forward)*에 대한 백투백(Back-To-Back) 거래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TRF :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가입하는 통화파생상품으로 매 정산시점의 환율이 계약시 기준환율보다 낮을 경우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며 높을 경우 손실을 보는 계약

㉣ 외화파생상품 점검에 대한 실효성 제고

○ ◈◈◈◈부는 영업점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위험회피목적으로 적정한지 여부(헤지비율 준수여부 등)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나, 동 점검을 1분기 전체 거래 대상으로만 수행함에 따라 점검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점검 대상 시기를 조정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헤지비율[=외환파생상품 연중 누적액 / 실수요(연중예상)]이 1분기 중 100%를 초과할 가능성 미미

㉤ 비정형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

○ ◉◉◉◉부는 손익*의 대부분이 비정형 파생상품(TRF, Target Redemption Forward) 운용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외부평가값을 입수하여 거래 익일 장부처리하고 있어, 공정가치 산정의 객관성과 평가의 적시성이 우려되므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가치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9월말 현재 외화파생손익 ##.#억원 중 @@.@억원이 동 상품 운용에서 발생

㉥ 가격적정성 점검기준의 실효성 제고

○ ○○○○○부는 장외파생 거래 가격에 대한 일별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점검기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점검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점검기준의 관대화 경향 주요내용

상품	점검기준	관대화 경향 내용
장외외화 유가증권	고시가격 ±◴.◴%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서 일별금리 변동폭 허용수준(◕%)이 과도
통화파생상품 (CRS)	평가손익/명목금액 >◵.◵%	CRS는 FX SWAP과 동일한 커브를 가지고 평가함에도 CRS의 허용수준이 FX SWAP의 허용수준(◔.◔%)과 비교시 과도

㉥ 대고객 외환파생상품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 외환·파생 수수료는 별도의 기준 및 점검절차가 없어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량(신용등급, 만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리스크를 반영한 합리적 수수료 산출체계를 마련하고 대고객 외환·파생 수수료 점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철저

○ 은행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변동 위험을 통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므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장외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장외파생상품 가격변동 리스크 관련 통제미비

구분	내용	미비점
① 일중 포지션	포지션한도를 ①일중한도와 ②이월한도로 관리	일중한도 점검결과가 포지션 한도관리 보고서에 누락되고 있으므로 보고서를 정비할 필요
② 금리파생	금리파생(FX SWAP, CRS, IRS 등)의 경우 포지션 한도로만 통제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기간구조가 중요 리스크 요인이므로 기간구조를 반영한 민감도* 한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 * 환델타 한도, BPV한도, Cash한도, bucket별 한도 등
③ 파생상품 손실	은행은 외화운용 관련하여 ▲▲억원의 연간손실한도*를 설정 * ①현선물대고객: ▽▽억, ②현선물 트레이딩: ◐◐억, ③파생: ◑◑억, ④IRS:◓억	파생상품거래의 대부분이 비정형 파생상품(TRF) 백투백(Back-To-Back) 거래로서,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손실한도를 실효성 있게 낮출 필요

◎ 파생상품 평가에 사용되는 마켓데이터 정비

○ 은행은 외환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통하여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에 사용되는 마켓데이터의 정의가 누락되거나 정의와 다르게 사용되는 등, 동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파생상품 평가시 왜곡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마켓데이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